

스웨덴의 工業所有權制度



① 工業所有權制度의 特徵

스웨덴의 特許法은 1968年에 改正하여 施行되고 있으며 現行法은 1884年의 舊法을 거의 80년 만에 改正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나라에서 特許될 수 있는 要件은 產業上 利用할 수 있어야 하며 特허 받을 수 없는 것은 美風良俗이나 公共秩序에 違反하는 것과 動植物品種, 栽培, 飼育에 관한 本質的인 生物學的方法食物 또는 醫藥에 관한 發明 등이다.

新規性 判斷은 出願前에 公知된 발명과 本質적으로 달라야 한다(공자는 文書로서 記述, 口頭에 의한 陳述, 實施 및 其他方法으로 公衆이 알 수 있는 狀態)。

優先權은 巴黎條約加盟國은 물론 相互保護協約國家에 認定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와는 1961年 7月 15日, 1969년 5월 20일에 特허와 商標에 관한 確認書交換國으로相互內國民待遇를 해 주고 있으나 우선권은 認定치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나라는 노르웨이, 벤마크,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3個國과 協約을 맺어 그 어느나라에 출원하드라도 同一한 効力を 發生시키는 이른바 노르딕特許出願을 採用하고 있다.

한편 스웨덴의 特許主務官廳은 特許廳과 特許登錄廳이 있으며 出願, 審查業務는 特허청이 그리고 特허등록업무는 特허등록청이 擔當하는 二元組織으로 되어 있다.

特許權의 存續期間은 特허출원일로부터 17년 을 經過할 때까지이며 追加特許는 原特許의 殘存期間에 獨立特許로 존속한다(特許權 소멸의 경우).

商標權의 존속기간은 登錄日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更新할 수가 있다.

裴 東 勳
(辨理士)

② 特許制度의 概要

1. 特許出願 및 審查

가. 特許出願

(1) 特허출원은 書面으로 特許賦與機關인 特허청에 提出하여야 한다.

(2) 出願書는 必要한 圖面을 포함한 發明의 明細書 및 特허로서 保護될 수 있는 正確한 記載(請求範圍)를 하여야 하고 명세서는 當業者가 그 발명을 實施할 수 있도록 充分히 明瞭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출원서에는 반드시 發明者의 姓名을 기재하여야 하고 발명자 이외의 자가 特허출원을 했을 때는 출원인은 그 발명에 관한 權利를 證明해야 한다.

(4) 출원인은 所定의 出願料를 納入해야 한다. 그리고 두개 이상의 서로 獨立된 발명에 관해서는 하나의 출원서로서 출원할 수 없고 발명 출원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출원인이 國內에 住所를 두지 않고 있는 在外者에 의한 출원은 國내에 居住하는 사람으로 選任된 代理人으로 하여금 一切의 事項을 대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要旨變更의 補正은 禁止되고 있으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特허출원을 보정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그것을 청구하면 그 特허출원은 보정했을 때에 출원한 것으로 看做한다.

나. 審 查

(1) 출원인이 출원에 관한 諸規定을 遵守하지 않거나 特허청이 출원을 受理에 관해서 障害事由를 發見했을 때에는 출원인에 그 要旨를 通知하여 一定期間을 指定한다음 意見書 또는 補正書의 제출을 命令하게 된다.

(2) 출원인이 지정된 期間內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指摘된 缺格이 없도록措處하지 않을 때는 그 출원은 却下된다.

(3) 다만 출원인이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4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缺格事由를 除去하고 繢行手數料를 납입하게 되면 각하된 출원의 審査는着手進行된다.

그러나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후에도 특허 출원의 수리에 관한 장해사유가 없을 때는 그 출원은 拒絕하게 된다.

한편 출원에 관련된 발명에 출원인이 아닌자가 自己의 권리임을 主張할 때에는 특허청은 지정기간에 그 권리에 관한 訴訟을 法院에 提起하도록 명령하고 그 소송이 完結될 때까지 출원에 관한 節次를 中止하게 된다.

특허청은 출원이 合當하고 特許賦與에 대한 缺格事由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 출원은 수리되고 아울러 公告하게 된다. 그리고 특허출원이 수리된 뒤에는 特許請求範圍의擴張이나 보정은 할 수가 없다.

출원인은 출원이 수리된 후 2개월 이내에 소정의 印刷費를 납입해야 하며 이를 履行치 않으면 그 출원은 각하된다. 그러나 기간의 경과 후 4개월 이내에 인쇄비 및 소정의 속행수수료를 내게 되면 각하된 출원의 심사는 다시 속행된다.

2. 出願의 公告 및 異議申請

특허청은 인쇄비가 完納된 출원에 대하여 公衆에 異議申請의 機會를 주기 위하여 출원을 公開하고 공개된 출원은 공고한다.

이의신청은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며 출원이 공고된 날 이후는 그 발명의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출원인 및 발명자의 情報에 관한 公報를 특허청으로부터入手할 수가 있다.

그리고 출원이 공해된 이후에 출원에 關係된 書類는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출원이 제출된 날 또는 同盟條約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는 주장하는 優先日로부터 18개월을 경과한 때 그 出願書類는 공고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었을 때에 특허청은 출원의 特許決定을 위해 심사에 착수하여 查定 또는 거절하게 되며 이의신청이 있었을 때는 이것을 출원인에 통지하여 이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

3. 審判 및 登錄

출원인이 特許廳 審査部의 最終決定에 대하여不服이 있을 때에는 審判을 청구할 수가 있고 이의 신청이 適法인데도 불구하고 그 출원에 특허를 부여했을 때도 異議甲請人이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에 따른 심판의 청구는 특허등록청의 심판부에 그 결정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심판부의 審決에 불복이 있으면 다시 上訴하게 되는데 심결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最高行政法院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특허출원의 수리가 결정되어 法的效力이 발생하면 특허를 부여하고 그 要旨를 공고하며 特許證을 發給한 다음 특허청이 保管하고 있는 特許原簿에 등록하게 되는 것이다.

4. 實施許諾 및 移轉

특허권자가 他人에게 業으로서 그 발명을 實施할 권리를 許諾했을 경우에는 實施權者는 契約으로 定하여 자기의 (실시권을 第3者에게 移轉할 수가 있다.)

한편 특허부여후 3년을 경과했거나 특허출원 후 4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 그 발명자가 국내에서 充分한 規模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면 국내에서 그 발명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이에 관한 強制實施權을 取得케하고 있다.

그 위에 公益上 重要하여 業으로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특허권에 관하여 강제 실시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強制實施權者の 資格은 實施許諾의 條件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그 발명을 실시할 能力이 있다고 보이는 자에게 강제 실시권이 許與된다.

강제 실시권은 법원에서 허여하게 되며 발명에

特 輯

실시되는 범위 및 그對價, 條件을 법원이 定하고 있다.

5. 特許權侵害 및 賠償

특허에 부여된 獨占權을 故意로 侵害한 자 및 이에 助力한 자는 罰金이나 6개월 이하의懲役에 處하고 있다.

侵害罪의 公訴는 被害者, 檢察官이 제기하고 특허권 침해에 대한 賠償訴訟은 그 소송이 제기되기 전의 5년간에 발생한 손해만을 包含하게 된다.

裁判에서 특허가 確定判決로서 無効하고宣告하였을 때에는 刑罰, 損害賠償, 기타 침해에 대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商標制度의 概要

스웨덴의 現行商標法은 1884년에 공포하여 여러 차례 개정하였는데 先願主義를 채용하고 著名商標의 保護規定을 設定하였으며 특허청의 통지에 의하여 商標權者는 後出願의 類似商標出願에 대해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는 등 이른바 獨逸系商標法을 採用하고 있다.

스웨덴 상표법의 要點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原則으로는 最先出願者가 등록을 享有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명상표(周知商標)에 관해서는例外로 하고 있다.

創刊12年! 定評있는 唯一한 韓國經濟의 總覽!

韓國經濟年鑑

77年版

政策樹立, 企業經營, 國内外 經濟分析,
經濟調查研究業務에 必須不可缺한 資料!

特輯 : 韓國經濟政策30年

附錄 : 財界人士錄 (4,000余 人士收錄)

4×6倍版 1,400余面, 實費領布価 10,000원

全國經濟人聯合會發刊
서울特別市 鍾路區 貢鉄洞 10
(73)8853 (73)1090 (74)5317

2. 審查主義을 채용하고 있으나 出願公告制度는 없다. 다만 상표가 등록되었을 때 政府의 登錄公報에 공고되는 이외에 日刊新聞에는 등록공고를 할 수가 있다.

3.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明文規定이 없고 특허청의 심사중에 類似商標를 발견하였을 때 선원의 상표권자에 그 요지를 통지하여 상표권자가當該出願에 대하여 이의신청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憲例으로 되어 있다.

4. 拒絕査定通知를 받은 출원인은 國王에게當該査定日로부터 60일 이내에 訴願을 제기하여 救濟를 받도록 하고 있다.

5. 商品類別 없이 商標登録出願人은 1출원에 대하여任意의 상품을 지정할 수가 있으나 聯合商標制度는 없다.

6. 商標權侵害罪는 상표권자의 告訴에 의하여 침해자를 處罰하게 된다.

7. 商標不使用에 의한 상표등록의 取消制度는 없다.

8. 상표권자의 營業이 讓渡되었을 때는 상표권도 원칙적으로 여기에 附隨하여 移轉하게 되나 당사자의 合意에 따라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을 留保할 수가 있고 또한 種類가 다른 指定商品에 대하여當該商標權의 分割移轉을 할 수가 있다.

9. 團體標章의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10. 外國登録商標에 관해서 國王은相互保護主義의 원칙에 따라 法令 및 미풍양속에 위반하지 않은 상표는 외국에서 등록된 것과 똑같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外國人은 상호보호의 원칙에서 권리 향유할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스웨덴에 출원한 상표는 本國에서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대리인을 선임하고 스웨덴에서의 지정상품의 범위 또는 존속기간은 본국(외국인의)에서의 그것보다 광범위하거나 長期에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출원(생신출원 등)에 있어서는 출원료 이외에 등록료, 公告料로서 50그라운을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生신출원은 75그라운을 내면 3개월의 延長이 가능하다.